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위원장

제838호 2011. 8. 1.(월)

## 차 례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809호 손실 보상 계획 및 열람 공고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-814호 인천광역시서구 서원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 
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3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809호

## 손실보상계획및열람공고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1-23(2011.5.23)호 인천도시계획시설(공원:감중어린이공원) 실시계획인가 및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1-35(2011.7.29)호 인천도시계획시설(공원:감중어린이공원) 실시계획(변경)인가로 고시된 [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7번지 일원]의 편입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]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,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물건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1. 8. 1.

### 인천광역시서구청장

#### 1. 사업의 개요

사업명	사업기간	사업시행지	사업규모(m <sup>2</sup> )	사업시행사
감중어린이공원 조성공사	2011년 ~ 2013년	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57번지 일원	총 면 적 : 5,572	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# 2. 보상계획

- 보상시기 : 감정평가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후 개별토지
- 보상절차 : 보상계획열람공고→감정평가→보상금산정→보상협의(대면협의)  
→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
- 보상금 지급방법 : 은행계좌로 현금 송금
- 보상금산정방법 :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 
- 단, 감정평가업자 추천 시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보상대상 : 상세내역 별첨 참조

#### 3.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

- 열람공고기간 : 2011. 8. 01. ~ 2011. 8. 17.
- 열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(☎560-4800,4805)

#### 4.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내역

○ 토 지

위 치	지 번
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	157, 157-1, 157-2

○ 물 건 : 허병문의 총5건[상세내역 개별통지하고 열람 장소 비치]

#### 5. 기타사항

- 위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세부조서를 우리 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에 비치하고 있으며, 보상계획 열람/광고 내용을 소유자 및 관계인께 등기 우편 통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지경관과 공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(전화:032-560-4800,4805)
-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송부 제출하시면 조서 검토와 현장 확인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- 814호

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1년 8월 1일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 
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관광서구를 대표하는 정서진 이미지 홍보 및 지명도 제고를 위해

우리구 소유 선박의 명칭을 변경하여 홍보

2. 주요내용 : 일부조례 개정[붙임 일부개정 조례(안) 참조]

3. 의견제출

- 이 일부개정 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·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: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전화:560-4161, FAX:560-4159]

- ▷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▷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▷ 기타 참고사항 등

붙임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1부.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서구서원호운영및위탁관리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, 제2조제1항 및 제3항, 제4조의 각 호 외의 부분, 제6조제1항, 제10조, 별지 제2호서식 중 “서원호”를 “정서진호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인천광역시서구인부고용규정”을 「인천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